

의안번호	제 호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 연월일	2023. 9. 1.

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9. 1.

제 출 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2023년 고성군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소관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화하고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안건 발생 시 구성하여 심의종료 후 해산할 수 있도록 상설에서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변경(안 제16조제1항, 제5항)
- 나.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구성 간소화(안 제16조제2항, 제3항, 제4항)
- 다. 비상설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의 임기, 위원의 위촉 해제안 삭제(안 제18조, 제2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3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
 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-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22567(2023.6.8.)]
- 라. 기 타
 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3-987호

가) 예고기간: 2023. 06. 12. ~ 07. 02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둔다”를 “둘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장 2명”을 “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”을 “위원장”으로, “위촉직 위원장”을 “부위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당연직위원”을 “당연직 위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제18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촉직 위원 해촉에 관한 적용례) 종전 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고성군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촉 위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 이후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) ① (생 략)</p> <p>제16조(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 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회적경제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를 <u>둔다</u>.</p> <p>② 위원회는 <u>위원장 2명</u>을 포함 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③ <u>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</u>은 부군수가 되고 <u>위촉직 위원장</u>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<u>당연직위원</u>은 인구청 년추진단장, 주민생활과장, 경 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 수가 위촉한다.<타법개정 2022. 11.4. 조 2760>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3조(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) (현행 제1항과 같음)</p> <p>제16조(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둘 수 있다</u>.</p> <p>② ----- <u>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</u>-----.</p> <p>③ <u>위원장</u>----- ----- <u>부위원장</u>-----.</p> <p>④ ----- ----- <u>당연직 위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</u>.</p>

제18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
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
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
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다만,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임
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
한다.

<삭 제>

제20조(위원의 위촉 해제) ① 군
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
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
제 할 수 있다.

<삭 제>

1. 장기불참, 질병 등 장기간 직
무수행이 곤란한 경우
2. 품위손상 등 직무 수행이 부
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
3.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
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-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
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
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경제기업과장 한 영 대

□ 사회적기업 육성법

제3조(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)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